

#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Ver 22.5)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교육 대상	신청자격	○ <b>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b> - 제외대상 : 위험물분야 자격 취득자 및 결격 해당자 제외 <b>위험물분야 자격분야 및 경력자(자격취득 불필요)</b>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 6 1. 자격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2. 경력자 : 소방공무원경력자(3년이상)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만 15세 미만인 사람 2.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단,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3. 팔, 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사람 4. 기타 지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 5. 교육수료 취소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 근거 : 안전원 「교육업무규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교육 안내	과정명	○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강습일정	○ 안전원사이트 강습일정 참고										
	교육과정	※ 1일 8시간 교육(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과정</th> <th>교육형태</th> <th>교육시간</th> <th>교육장소</th> <th>수수료(원)</th> </tr> </thead> <tbody> <tr> <td>집합과정</td> <td>소집교육</td> <td>소집 3일(24시간)</td> <td>안전원 교육장</td> <td>120,000원</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장소	수수료(원)	집합과정	소집교육	소집 3일(24시간)	안전원 교육장	120,000원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장소	수수료(원)							
	집합과정	소집교육	소집 3일(24시간)	안전원 교육장	120,000원							
학습흐름도												
수료기준	○ 소집교육(3일) → 수료(자격 취득) ○ 수료시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이 발급됩니다.											
일정변경	○ 해당 강습교육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단, 해당 연도 강습일정에 한하여 일정변경 가능)											
교육장소	○ 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교육 접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수수료	○ 교육수수료 : 120,000원 ※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사진(3.5*4.5cm) 1매, 신분증(교육당일 지참)												
	환불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환불기준</th> <th>교육수수료 환불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수강자가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한 경우</td> <td>전 액</td> </tr> <tr> <td>과오납한 경우</td> <td>과오납 금액</td> </tr> <tr> <td>수강자가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td> <td>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td> </tr> <tr> <td>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td> <td>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td> </tr> <tr> <td>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td> <td>없음</td> </tr> </tbody> </table>	환불기준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수강자가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한 경우	전 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수강자가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환불기준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수강자가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한 경우		전 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수강자가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없음												
<p><b>[환불 유의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결제 후 교육실시 전일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제 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li> <li>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li> </ol>													

자격취득 후 선임대상	○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의 위험물취급) 선임
----------------	-------------------------------------

교육비 결제방법 안내	<p>» 신용카드 결제</p> <p><b>주 의 사 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결제 후 교육실시 전일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신청 하셔야 합니다.</li> </ol>
	<p>» 무통장 입금</p> <p><b>주 의 사 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습교육 신청 후 익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강습교육 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li> <li>무통장 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재사용(다시 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이 불가능합니다. 재사용으로 인한 금전손실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이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li> <li>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li> <li>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li> <li>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a href="http://www.kfsi.or.kr">http://www.kfsi.or.kr</a> 접속 &lt; 교육정보 &gt; 강습정보 &gt; 강습신청내역 메뉴]</li> <li>신용(체크)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3주 정도 지연 될 수 있습니다.</li> </ol>

※ 별첨

##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과목 및 시간

강습과목		시간
이론	소방관계법령	3
	소방학개론	1
	위험물성상	2
	<b>소 계1</b>	<b>6</b>
실무	위험물제조소등 시설기준	3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2
	위험물제조소등 소화·경보·피난설비 기준	1
	<b>소 계2</b>	<b>6</b>
실습 및 평가	서식작성 실습·평가 (예방규정, 위험물취급일지, 일반점검표)	3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점검 실습·평가	6
	비상대응 실습·평가	1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2
	<b>소 계3</b>	<b>12</b>
<b>총 계</b>		<b>24</b>

비고. 교육종료 전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